西紀 1983年 8月 2日 制定施行
西紀 1990年 4月 30日 改定施行
西紀 1993年 6月 2日 改定施行
西紀 2000年 8月 29日 改定施行
西紀 2002年 8月 8日 改定施行
西紀 2020年 9月 17日 改定施行
西紀 2026年 7月 16日 改定施行

賞 罰 規 定

원본

仁川廣域市個人택시運送事業組合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포상 및 징계)

제 2 장 , 상 벌 위 원 회

제 4 조 (상벌위원회)
제 5 조 (위원회 의결)
제 6 조 (임 무)

제 3 장 , 포 상 사 항

제 7 조 (포상종류)
제 8 조 (포상대상)
제 9 조 (포상대상 선정)
제 10 조 (포상일자)

제 4 장 , 징 계 사 항

제 11 조 (징계의 적용)
제 12 조의 1 (직원의 징계사유)
제 12 조의 2 (조합원의 징계사유)
제 13 조 (징계의 종류)

제 5 장 , 이 의 신 청

제 14 조 (이의신청)
제 15 조 (징계의 재심)
제 16 조 (정상참작)
제 17 조 (제척 및 기피)
제 18 조 (심문과 진술)

제 6 장 , 부 칙

제 19 조 (예외결정)

제 20 조 (시행일)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조합의 기강 및 사기앙양과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하는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조합 직원 및 조합원, 임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과 조합 직원, 조합원의 징계를 이 규정에 의거 적용한다.

제 3 조 (포상 및 징계)

1.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 제3장 포상사항에 정한다.
2.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 제4장 징계사항에 정한다.

제 2 장 , 상 벌 위 원 회

제 4 조 (상벌위원회)

1. 포상 및 징계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
2. 상벌위원회 위원은 본 조합의 전 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조합원 징계 시 전무이사는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음.

제 5 조 (위원회의 의결)

상벌관계 처분의 의결은 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임 무)

상벌위원회의 임무는 상벌관계를 심의 결정한다.

제 3 장 , 포 상 사 항

제 7 조 (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부처 장관의 포상.
2. 인천광역시장의 포상.
3. 연합회장의 포상.
4. 이사장의 포상.
5. 기타 단체장의 포상.

제 8 조 (포상대상)

포상을 받을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조합원 및 직원.

제 9 조 (포상대상 선정)

1. 포상 대상의 선정은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기타 이사장이 필요로 하는 포상 대상 선정은 이사장 및 전무이사 전결 사항으로 한다.

제 10 조 (포상일자)

조합 창립기념일 또는 총회 시 포상을 하며 기타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 징 계 사 항

제 11 조 (징계의 적용)

징계사항은 직원 및 조합원에 해당한다.

제 12 조의 1 (직원의 징계사유)

직원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준한다.

제 12 조의 2 (조합원의 징계사유)

1. 조합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한 자

2. 조합의 기밀문서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외부에 누설한 자
3. 정관 제9조(조합원의 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4. SNS나 문자 및 유인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5. 조합의 의결사항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SNS나 유인물을 이용하여 방해한 자
6.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및 고성으로 조합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자
7. 회의 구성원이 아닌자가 발언권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8.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고성, 욕설, 소란행위를 한 자
(퇴장명령 3회 이상 불응시)
9. 허위사실을 작성 배포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조합원을 선동하여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10. 조합이 시행하는 각종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저해한 자
11.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12. 조합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한 자
13. 조합의 이사회의, 대의원회의, 조합원총회, 선거관리업무, 일제점검등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폭력 폭언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14. SNS를 이용 허위사실로 조합 및 임원을 비판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15. 회의장내 폭행 및 기물파괴를 하며 회의진행을 방해한 자
16. 직원에게 협박, 폭행, 등의 행위를 한 자
17. 경고 2회를 받은자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고, 자격정지 2회를 받은자는 제명 할 수 있다.
18. 상기 9항,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 16항의 위반행위로 8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다.

제 13 조 (징계의 종류)

1. 직원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② 견책(시말서) ③ 감봉 ④ 정직(휴직) ⑤ 해고

징계위원회가 직원의 징계 사건을 의결 할 때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도, 징계 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

2. 직원이 해고 이외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징계 처분을 받을 행위가 있을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가중 적용 할 수 있다.
   ① 경고 2회 견책. ② 견책 2회 감봉. ③ 감봉 2회 정직. ④ 정직 2회 해고.
3. 조합원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 경미한 사항으로 개정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해 처분을 받은자로 한다)
   ② 자격정지 및 피선거권 제한 : 본 규정 제12조의 2 9항,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 16항에 해당되는 자와 경고처분 2회 이상인 자로 한다. (단, 자격정지 기간에도 조합의 정관 제9조 및 10조에 따라 의무(예: 회비 및 특별회비 납부, 규정준수 등)를 유지한다.[2026.07.16신설]
   ③ 제명 : 제12조의 2 제18항에 해당하는 자와 자격정지 2회 이상인자
   단, 위 ②,③호는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 이 의 신 청

제 14 조 (이의신청)

징계를 받은 자가 해당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단, 3심은 불허한다.

제 15 조 (징계의 재심)

1. 이사장은 징계를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재심을 할 수 있다.
2. 재심을 청구할 시 차기 상벌위원회에서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정상참작)

징계사유에 목적, 행위, 발생동기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하여 경감처분 할 수 있다.

제 17 조 (제척 및 기피)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징계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18 조 (심문과 진술)

1.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진술을 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증인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6 장 , 부 칙

제 19 조 (예외결정)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 또는 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20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83년 8월 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0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3년 6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0년 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6년 7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